

	<h2 style="margin: 0;">실험실습비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3-1-12
			제정일자	2007.07.01
	개정일자	2021.09.01	개정번호	Ver .9
			총페이지	7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비를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실험실습비라 함은 실험실습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활동을 위하여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필요 제반 경비를 말하며 실험실습비와 현장실습비로 구분한다.

② 준소모성 실습기구라 함은 실험실습기자재와 같이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것으로 자산으로 등재하기 부적합한 실습기구를 말하며, 실험실습비 집행시 산학협력처가 구분 지정한다.<개정 2009.4.1.>

제3조(사용범위) 실험실습비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9.4.1., 2012.12.1., 2016.12.1.>

1.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약류, 초자류, 전자소모품류, 소모성공구류, 식품자재류, 실습용 문구류 등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비
2. 실험실습용 기기류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
3. 실험실습용 기계기구 유지보수비
4. 실험실습을 위한 준소모성 실습기구
5. 실험실습에 사용한 화학폐수 및 기타폐기물 처리비
6.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료
7. 연구활동중사자상해보험료
8. 교내·외 작품전·경진대회·학술대회·공모전 재료비 및 기타제경비
9. 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집기비품의 임차료
10. 실험실습을 위한 통신료, 호스팅 비용 및 1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갖는 소프트웨어
11. 실험실습비 중 현장실습을 위한 산학협력지원경비, 산학협동회의비, 산업체견학경비, 현장실습순회지도비, 현장실습보험료, 현장실습제경비, 취업지도비, 취업제경비

제4조(사용제한) 인건비성 경비 및 비품구입비, 교재개발비, 회의비, 교육목적 이외의 견학비, 축제지원비 등 실험실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용도에 대한 사용은 제한한다.

제5조(실험실습비 배정) ① 실험실습비는 매 학년도마다 대학에서 정한 실험실습비 예산에 의거 각 학부(과)별 실험실습재료비, 공동실험실습비, 현장실습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.<개정 2009.4.1.>

② 각 학부(과)별 실험실습재료비는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한다.

제6조(신청 및 집행절차) ① 산학협력처는 실험실습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

록 실험실습재료 신청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, 학부(과)는 매 학년도 확정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거하여 실험실습재료를 산학협력처에 신청하여야 한다.
 <개정 2009.4.1., 2013.5.1., 2021.9.1.>

② 산학협력처는 학부(과)별 신청한 실습재료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판단하여 사무처에 구매의뢰를 한다.<개정 2009.4.1.>

③ 사무처는 실험실습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매한다.

제7조(검수) 실험실습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한 검수는 신청한 부서의 장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신청 부서의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21.9.1.>

제8조(관리 및 운영) ① 학부(과)는 [별지 제 2호 서식]에 의거 실험실습일지 및 재료수불부를 반드시 작성하여 매 학기별로 학부(과)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하고 5년 경과 후 자체 폐기 한다.<개정 2009.4.1., 2011.2.1.>

② 학부(과)는 준소모성 실습기구에 대해서는 자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<개정 2013.5.1.>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결 재	담당	팀장	처장

실험실습비 예산조사서 (물품구입 청구서)

결 재	담당	팀장	처장	총장

(단위 : 원)

품 명	규 격	수 량	단 위	단 가	금 액	부 가 세	비 고
						포함	
계							
지출과목	관	연구학생경비	항	학생경비	목	실험실습비	

상기 물품을 월 일까지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년 월 일

청 구 자	학부(과)명	
	학부(과)장	

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

[별지 제2호의1 서식]

취 급 요 령

1. 실험실습에 사용한 기자재명을 기재한다.
2. 실험실습에 소요된 실습재료를 기재하되 실험실습재료 수불부와 일치하여야 한다.
3. 실험실습일지는 실습 후 학부(과)장 및 담당 교수의 결재를 득한다.
4. 실험실습 도중에 파손되거나 망실한 기자재명과 조치사항을 기재한다.
5. 실험실습실을 산업체 공동활용시 업체명과 대표자, 연락처, 활용 시간 및 산학협동 협약 여부를 기재한다.
6. 실험실습실 안전수칙에 의하여 전원, 가스, 유독약품, 소화기, 전열기등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.
7. 실험실습실에 설치된 고가 실험실습기자재를 수시 점검하여 이상 유무 및 조치사항을 기재한다.
8. 실험실습일지는 매 학기말에 학부(과)장 결재 후 학부(과)에 보관한다.

****학년도 1학기

담 당	학부(과)장

****학년도 2학기

담 당	학부(과)장

[별지 제2호의2 서식]

실 험 실 습 일 지

실 험 실 습 일 지				결 재	담당조교	담당교수	학부(과)장
학부(과)명		학년/반		출석인원	명		
실습과목		실습실명		실습일시	년 월 일() ~ 교시		
실습내용 및 결과							
안전관리 교육내용							
코드번호	사용 기자재명	규 격		수량	비 고		

순서	사용 소모품명	수량	순서	사용 소모품명	수량

특기사항 (이상 유/무)	
------------------	--

